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3. 7. 20.>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폐기신고자 (농업기계해체 재활용업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폐기일	
폐기신고 대상 농업기계	기종명	형식명(모델명)	
	규격	제조번호	
	검정번호	제조연월일	
	최초농업기계 제작사	출고일자	수입일자
부착 원동기	형식명	원동기코드	
	규격(최대출력) kW	제조번호	제조사
폐기의뢰자 (최종소유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폐기결과	폐기물 중량(kg)	재활용 부품 내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p>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영상물을 포함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된 형식표지판</li> <li>인수 시 농업기계의 중량</li> <li>농업기계의 해체 과정</li> <li>폐기 후 농업기계의 상태(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보호구조물 폐기 상태를 포함합니다)</li> </ol>
------	--